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548.
--------	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11. .
제안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인구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활한 관할구역관리 및 산적한 시정현안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의한 안산시 행정기구 정원보강 승인 신청안이 상급기관(내무부, 경기도)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안산시 소속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150명 늘어난 1,376명으로 하고 기관별 총 정원수를 다음과 같이 함.

계	분 청	의 회	직속기관	사 업 소	출 장 소	동
1,376	583	24	56	320	8	385

□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(조례)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- 경기도 자치 12200-3273('96. 11. 1)호 공문

○ 소요예산 - 339,394천원/년

- 인 건 비 : 227,954천원/월
- 물품구입비 : 50,690천원
- 기타경비(일반업무추진비, 복리후생비, 여비) : 60,750천원

○ 조 례 안 : 별첨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 중 제1호 본청 정원의 총수 "574"를 "583"으로, 제2호 의회 정원의 총수 "20"을 "24"로, 제4호 사업소 정원의 총수 "211"을 "320"으로, 제6호 동 정원의 총수 "357"을 "385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계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본 청 : 574명 ----- 2. 의 회 : 20명 ----- 3. (생 략) ----- 4. 사업소 : 211명 ----- 5. (생 략) ----- 6. 동 : 357명 -----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본 청 : 583명 ----- 2. 의 회 : 24명 ----- 3. (현행과 같음) ----- 4. 사업소 : 320명 ----- 5. (현행과 같음) ----- 6. 동 : 385명 -----</p>